

# 05

## 한눈에 보는 수중레저사업

01 수중레저사업 종류 및 등록 안내

02 사업 등록절차, 준비사항 등

### 01. 수중레저사업 종류 및 등록 안내

#### 사업 종류

- ◆ (임대업)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빌려주는 사업
- ◆ (운송업) 수중레저활동자를 수중레저기구에 태워서 수중레저 해역까지 운송하는 사업
- ◆ (교육업)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교육하는 사업

#### 결격 사유

#### 사업 등록 결격 기간(시점)과 사유

##### 등록시

- ①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
- ② 「수중레저법」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

##### 2년

- ③ 「수중레저법」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(實刑)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④ 아래의 사유로 수상레저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

- ▶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 등록
  - ▶ ②, ③에 해당하는 경우
  - ▶ 점·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된 공유수면에서 계속 영업
  - ▶ 사업자나 종사자가 사람을 사상한 경우
  - ▶ 사업의 변경 등록을 하지 않거나, 「수중레저법」을 위반\*한 경우
- \* 이용 요금 미신고, 사업 종사자 교육 미수료, 사업자 준수 의무 위반, 영업 제한 위반

# 05 한눈에 보는 수중레저사업

## 02. 사업 등록 절차, 준비 사항 등

### 등록 절차



### 준비 사항

#### ◆ 수중레저사업별 자격 기준 및 제출 서류(명세서)

	임대업	운송업	교육업
처리기관	전국 관할 해양경찰서	전국 관할 해양경찰서	전국 관할 해양경찰서
자격기준	수중레저장비 수리 기술 자격	수중레저기구 조종 자격	수중레저교육자 자격
명세서	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	수중레저기구	-
공통 제출 사항	정관(법인인 경우에 한함) + 종사자 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		

(임대업 자격 기준 인정 범위) 수중레저장비 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 포함

#### ◆ 수중레저장비 종류

**장비 종류**

- ① 수경    ② 숨대롱    ③ 공기통    ④ 호흡기    ⑤ 부력조절기
- ⑥ 잠수복, 잠수모    ⑦ 오리발    ⑧ 추    ⑨ 수중칼    ⑩ 호루라기
- ①~⑩까지의 수중레저장비와 비슷한 형태 또는 기능을 가진 것

### ◆ 수중레저기구 종류

#### 선박, 기구 종류

- 「선박법」에 따른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
- 수상오토바이, 모터보트, 고무보트, 세일링요트, 스쿠터, 공기부양정, 수륙양용기구와 이와 비슷한 구조·형태·추진기관 또는 운전 방식을 가진 것

### ◆ 수중레저기구 조종 자격

#### 조종 자격

-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
  - ① 일반조종면허(1급, 2급), ② 요트 조종면허
- 선박법 어선법에 등록된 선박을 조종하는 경우
  - ① 항해사(1급 ~ 6급), ② 기관사(1급 ~ 6급), ③ 소형선박 조종사

### ◆ 수중레저교육자 자격

#### 교육자 자격

- 수중레저교육자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(단체)\*으로 지정된 교육기관(단체)에서 수중교육자 자격 취득 교육을 이수한 경우
- \* 「수중레저법」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고시하는 관련 법인 단체

## 수중레저기구 조종 자격 세부 기준

### ◆ 「선박직원법」에 따른 자격 요건

톤수 총톤수, 정원 여객정원

구 분		연안수역	원양수역
톤수 < 25톤 (소형선박)	정원 < 13명	1명 승무 가능 (선장 및 기관장) 소형선박 조종사	각각 1명씩 승무 (선장) 6급 항해사 (기관장) 소형선박 조종사
	정원 ≥ 13명	각각 1명씩 승무 (선장) 6급 항해사 (기관장) 소형선박 조종사	각각 1명씩 승무 (선장) 6급 항해사 (기관장) 6급 기관사

### ◆ 「수상레저안전법」에 따른 자격 요건

톤수 총톤수, 정원 여객정원

구 분		모터보트	요트
톤수 < 5톤	정원 < 13명	1급 또는 2급	요트
	정원 ≥ 13명	연안수역인 경우 1급 또는 2급 + (선장) 6급 항해사 (기관장) 소형선박 조종사	원양수역인 경우 요트 + (선장) 6급 항해사 (기관장) 6급 기관사
5톤 ≤ 톤수 < 20톤	정원 < 13명	1급 또는 2급 + 소형선박 조종사	요트 + 소형선박 조종사
	정원 ≥ 13명	연안수역인 경우 1급 또는 2급 + (선장) 6급 항해사 (기관장) 소형선박 조종사	원양수역인 경우 요트 + (선장) 6급 항해사 (기관장) 6급 기관사

※ 6급 항해사·기관사 면허,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는 「선박직원법」의 한정면허를 포함한다.

# 06

## 한눈에 보는 수중레저활동

- 01 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신고
- 02 야간 수중레저활동 기준
- 03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채취 행위

### 01 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신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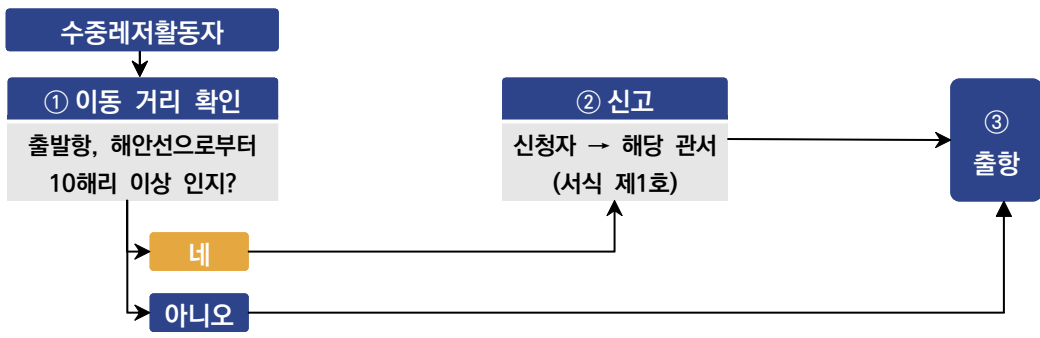
#### 신고 대상

◆ 출발항 또는 해안선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

#### 용어 정의

- ◆ **해안선**
  - 해수면이 약최고고조면(略最高高潮面: 일정기간 조석을 관측하여 산출한 결과 가장 높은 해수면을 말함 (「해양조사와 해양정보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1항 제3호))

#### 처리 절차



# 06 한눈에 보는 수중레저활동

## 02. 야간 수중레저활동 기준

### 정의

◆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의 수중레저활동

### 야간 수중레저활동 요건

#### 조명기구 기준

시행규칙  
제9조 제1호

- 1 방수기능
- 2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조도일 것
- 3 계획한 잠수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충전지 용량 확보

#### 발광 장비 기준

시행규칙  
제9조 제1호

- 1 자체 발광(發光)하는 장비일 것
- 2 빛의 자극으로 화학적으로 발광하는 형광물질이 사용된 장비
- 3 배터리 충전량과 형광물질이 활동 시간 동안 유지
- 4 인근에서 맨눈으로 식별될 수 있는 정도의 밝기로 발광 기능 작동
- 5 인근에서 맨눈으로 식별될 수 있는 정도의 밝기로 발광 기능 작동

#### 안전관리요원 동행 기준

《야간 수중레저활동자 대비 안전관리요원 인원수 예시》

야간 수중레저활동자 (안전관리요원 인원 미포함)	1~5명	6~10명	11~15명	16~20명
동행 입수 안전관리요원	1명 이상	2명 이상	3명 이상	4명 이상

\* (야간 수중레저활동자) 수중레저활동을 위해 별도의 자격이 필요 없는 일반 활동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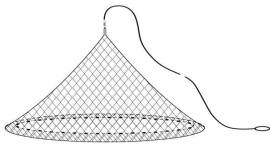
# 06 한눈에 보는 수중레저활동

## 03.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채취 행위

### 비어업인의 수산 자원 포획·채취허용 어구 형태

#### ◆ 사용 가능 어구

##### 투망



원뿔 형태의 그물로서 윗부분에는 기다란 손잡이 줄이 있고, 아래에는 추가 달린 형태

※ 그물의 아래 둘레 25미터 초과 금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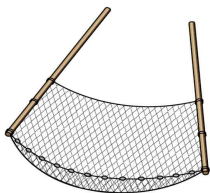
##### 뜰채(쪽지)



자루 모양의 그물 입구에 대나무나 철사 등으로 테를 두르고, 테에 한 개의 막대로 된 손잡이가 붙어 있는 형태

※ 테의 가장 긴 변의 길이(테가 원형이면 그 지름의 길이) 가 1미터를 초과하면 안 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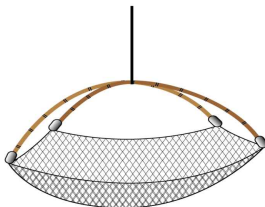
##### 반두(쪽대)



사각 형태 그물의 아랫부분에는 추가 달려 있고, 양쪽 가장자리에는 막대로 손잡이를 붙여 만든 형태

※ 그물의 가장 긴 변의 길이 2미터를 초과하면 안 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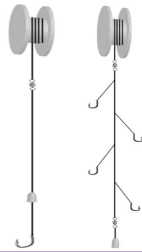
##### 손들망



일정한 모양의 틀이나 테의 아래쪽에는 자루 모양의 그물을 달고, 위쪽에는 목줄과 돌움줄(당김줄)을 단 형태

※ 그물의 가장 긴 변의 길이(틀이나 테가 원형이면 그 지름의 길이) 가 2미터를 초과하면 안 됨

### 외줄낙시



낙시줄 한 가닥에 낙시바늘 1개 또는 여러 개의 낙시바늘을 단 형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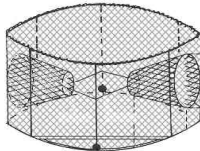
### 가리



대나무와 같은 재료를 엮어서 밑과 위가 뚫린 원뿔대 모양으로 만든 형태

※ 가리의 가로·세로·높이의 길이(원통형인 경우는 지름의 길이) 각각 80센티미터를 초과하면 안 됨

### 통발



일정한 형태의 고정된 테 위에 그물 등을 씌운 것으로서 윗면 또는 옆면에 입구가 있는 형태

※ 통발의 가로·세로·높이의 길이(원통형인 경우는 지름의 길이) 각각 80센티미터를 초과하면 안 됨

### 낮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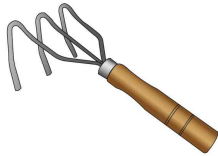
낮에 대나무 등 장대를 연결한 형태

### 집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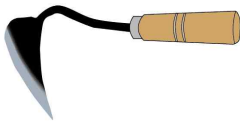
끝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어 그 끝으로 대상물을 집을 수 있는 형태

**갈고리**



쇠를 구부려서 앞쪽 끝은 뾰족하게 만들고, 뒤 끝에 손잡이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

**호미**



끝은 뾰족하고 위는 넓적한 삼각형의 쇠판에 손잡이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

**삽**



삼각형 등의 얇은 판(板)에 손잡이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

**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·채취 관련 적용 규정**

형법 : 「형법」 위반, 수산 :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위반

수산자원 채취구역 비어업인 채취 방법		마을어장 內		마을어장 外
		마을어업 조성 수산자원	기타 수산자원	수산자원
허용 어구	손	금지 <span>형법</span>	가능	가능
	집게	금지 <span>형법</span>	가능	가능
	투망	금지 <span>형법</span>	가능	가능
금지 장비	칼	금지 <span>형법</span> , <span>수산</span>	금지 <span>수산</span>	금지 <span>수산</span>
	작살	금지 <span>형법</span>	금지 <span>수산</span>	금지 <span>수산</span>
스쿠버 장비	공기통	금지 <span>형법</span> , <span>수산</span>	금지 <span>수산</span>	금지 <span>수산</span>
	무게추	금지 <span>형법</span> , <span>수산</span>	금지 <span>수산</span>	금지 <span>수산</span>
	부력조절기	금지 <span>형법</span> , <span>수산</span>	금지 <span>수산</span>	금지 <span>수산</span>

※ 수산자원 포획·채취 시 허용되는 수중레저장비 : 수경, 숨대롱, 잠수복, 잠수모, 오리발, 수중칼, 호루라기

## 법령 위반 사례

### ◆ (사례1) 마을 어장 내에서 손으로 전복을 채취하는 행위 금지

- 전복이 마을어업으로 조성하는 수산자원일 경우 형법상 절도죄 적용

### ◆ (사례2) 마을 어장 밖에서 작살로 문어를 포획하는 행위 금지

-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18조 위반(1천만원 이하 벌금)

### ◆ (사례3) 마을 어장 내에서 투망으로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 허용

- 마을어업 조성 수산자원에 해당하지 않는 어류는 포획 및 채취 가능

### ◆ (사례4) 마을 어장 밖에서 집게로 전복을 채취하는 행위 허용

- 「수산자원관리법」상 허용되는 채취 방법인 집게를 사용하여 채취 가능

#### 수산자원관리법('25. 8. 7. 시행)

**제18조(비어업인의 포획·채취의 제한)** 「수산업법」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·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65조(벌칙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2. 제18조를 위반하여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·채취한 자

####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('25. 8. 7. 시행)

**제6조(비어업인의 포획·채취의 제한)** ① 「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7조의 2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의 형태 및 사용방법은 별표 1과 같다.

- ② 시·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포획·채취 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당 포획·채취 기준이 적용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.